



자가운송 요청서 및 각서

수신: 태영상선(주) / 자가운송 승인 담당자
서울, 부산 : TEL) 02-3783-9631

귀사(태영상선(주))의 선편으로 국내항에 입항하는 당사의 수입화물을 당사가 지정한 운송회사를 통하여 자가운송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 합니다.

- 다 음 -

1. 자가운송 기간 :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
2.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운송회사는 Freetime 이내에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/반납하며 기간내에 반납하지 않아 발생하는 Over Freetime Charge 제반비용은 당사가 부담할것을 약속함.
3. 당사는 컨테이너 반출시 반드시 컨테이너의 상태를 검사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귀사에 서면 및 유선으로 통보하고, 만약 통보가 없으면 해당컨테이너는 아무런 하자 없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함.
4. 당사는 컨테이너 반출시부터 귀사가 지정한 CY/Depot에 반납시까지 발생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귀사를 면책시키고 모든 책임 부담은 물론, 귀사가 정하는 금액(수리비, 감정료 및 변호사비 등 포함)을 배상할 것임.
 - 가. 컨테이너의 멸실, 컨테이너 내외장의 손실, 손상, 파괴, 오염, 탈색, 변색 및 기타 가치저하 등
 - 나. 컨테이너로 인하여 당사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물질, 인적 손해
 - 다. 냉동컨테이너의 경우 MG SET 및 냉동기기의 고장, 손괴, 망실 등
 - 라. 컨테이너 반출 후 발생한 화물의 멸실, 손괴, 부족 및 기타 가치 하락 등 모든 손해
5.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운송회사는 컨테이너를 인도 받은 후, 귀사의 Freetime 기간 이내에 귀사의 CY/Depot에 컨테이너를 반납토록 하겠으며, 귀사의 반납 요청기한을 넘긴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귀사의 규정 및 Tariff에 의거 해당 비용을 지불하겠음.
6. 당사는 상법, 해운법, 항만법 및 기타 관계법령, 상관습의 준수 및 필요한 모든 신고, 허가 등의 절차이행을 당사의 책임하에 수행하였음을 담보함. 당사가 지정한 운송회사 역시 컨테이너의 실제 반출시부터 반납시까지의 전기간 동안 모든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을 구비 및 준수한 적격업체임을 당사가 담보함.

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운송회사가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귀사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, 당사가 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, 상기 사항의 불준수에 따른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지겠습니다.

<p>운송 의뢰인(Master B/L상 Consignee)</p> <p>명판 및 직인</p>
<p>1.사업자번호:</p> <p>2.담당자:</p> <p>3.연락처:</p> <p>4.B/L No.:</p> <p>5.실화주명:</p>

<p>운송인</p> <p>명판 및 직인</p>
<p>1.담당자:</p> <p>2.연락처:</p> <p>3.eTrans ID:</p>

년 월 일